

코로나19 관련 <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> 안내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**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**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**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** 이에 따라 입원·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, **그 밖의 입원·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중복지원 불가)**

신청대상	코로나19 관련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* 단,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* 지원제외대상에 대한 세부규정이 있으니, 신청전 문의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바랍니다.					
지원금액	(단위: 명, 월)					
	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 이상
	생활지원비	454,900	774,700	1,002,400	1,230,000	1,457,500
신청기관	주소지 읍면사무소					
신청기간	입원자는 퇴원일 이후,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이후					
신청서류	생활지원비 신청서, 신청인 명의 통장 *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자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, 위임장 작성 필요					
문의처	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고성군 주민생활과					
	구분	연락처	구분	연락처		
	주민생활과	055-670-2657	-	-		
	고성읍사무소	055-670-5883	영오면사무소	055-670-5391		
	삼산면사무소	055-670-5063	개천면사무소	055-670-5413		
	하일면사무소	055-670-5113	구만면사무소	055-670-5463		
	하이면사무소	055-670-5163	회화면사무소	055-670-5523		
	상리면사무소	055-670-5213	마암면사무소	055-670-5563		
	대가면사무소	055-670-5262	동해면사무소	055-670-5614		
	영현면사무소	055-670-5313	거류면사무소	055-670-5663		

< 유급휴가비용 사업 >

- 신청자격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*를 제공한 사업주
- 지원금액: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(1일 최대 13만원)
- 신청기관: 국민연금공단 지사 ※ 통영고성지사 055-650-8521 (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16)
- 문의처: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129 보건복지상담센터